

2024년 「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」 건축설계 실무 연수 및 건축 교류활동 수행대학 모집 공고
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국내 재학생의 건축설계 역량 향상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“건축설계 실무 연수 및 건축 교류 활동”의 수행대학 모집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4월 5일
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

본 사업의 관리 및 평가, 연수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「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업무처리지침(24.4.4.)」 (이하 “업무처리지침”이라 한다)의 적용을 받음

I 추진배경 및 목적

- 건축설계 분야의 공공성과 창의성, 문화적 가치 등 국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과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,
 - 건축설계의 고부가가치화에 따라 국가경쟁력 제고 및 건축설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수 인적자원 육성 필요
- 건축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의 우수한 건축설계 인력이 세계적인 건축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
 - 미래의 건축사로 성장하고자 하는 건축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건축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

□ 신청 안내

- (선정규모) 0개 대학
- (지원금액) 대학(대학원)별 최대 60,000천원 이내
- (지원기간) 협약체결일 ~ 2024.12.31.
* 6월 中 협약체결 예정
- (지원내용) 수행대학(대학원)을 선정하여 소속 재학생의 해외 실무 연수비(현지 체재비) 및 건축 교류활동비(국내·외 교류활동 실비) 지원
* (재 학생) 지원대학(대학원) 신청 학과 내 소속 재학생·휴학생(학사 3학년 이상 / 석·박사 전체)

구분	내용	지원금액
해외 실무연수	해외 건축사사무소 등에서 현장 실습, 인턴 등을 건축설계 실무수행을 위한 현지 체재비 지원	1인당 220만원/월
건축 교류활동	워크숍, 공모전, 전시 등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학생참여형 활동 및 유관기관 교류활동 운영비 지원	대학이 필요예산 책정하여 신청

□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

- (신청자격)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해당하고, 건축 설계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또는 대학원(산학협력단 제외)
*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은 교육부 홈페이지 「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」 ('23.7.6.) 참고 (홈페이지 - 정책 - 대학(원)교육 게시판)
- (유의사항) 해외 실무연수 신청이 필수사항이며, 건축 교류활동은 필요시 신청
* (A유형) 해외 실무연수 / (B유형) 해외 실무연수 + 건축 교류활동

□ 공통사항

- (지원금액) 대학(대학원)별 최대 60,000천원 이내
 - 사업비 : 최대 54,000천원
 - 운영비 : 최대 6,000천원(사업비 신청금액의 10% + 60만원(위탁정산수수료))

□ 해외 실무연수

- (지원내용) 해외 건축 설계분야 사무소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인턴쉽, 연구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현지 체재비 지원
- (지원금액) 월 체재비(1명당 2,200천원/월)를 기준으로 연수 희망 인원 및 기간에 맞춰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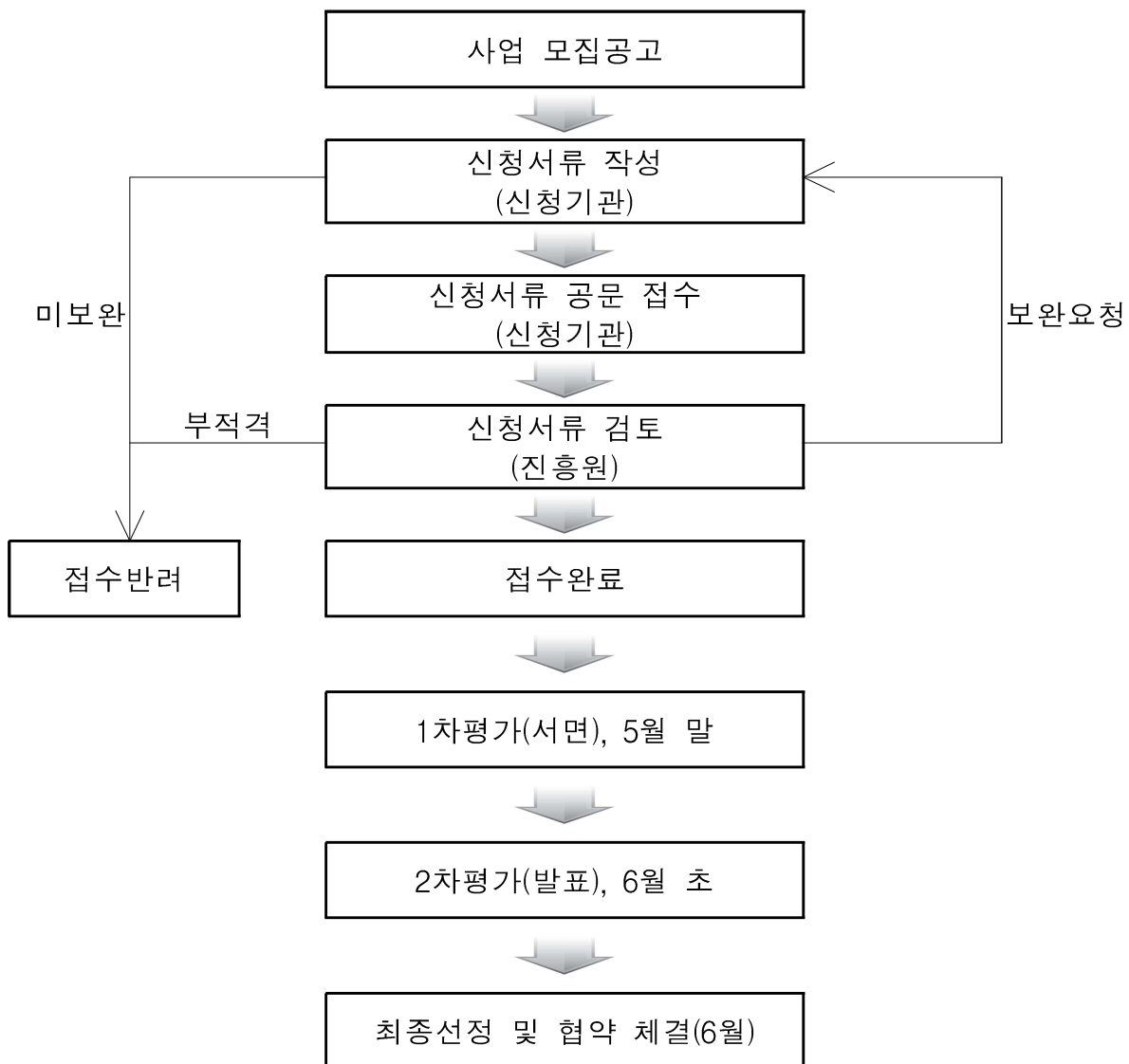
< 예시 > 연수희망인원 5명, 연수기간 3개월의 경우

사업비	2,200천원 x 5명 x 3개월 = 33,000천원
운영비	3,300천원(사업비의 10%) + 600천원 = 3,900천원
합계	36,900천원

- (지원인원) 대학(대학원)별 최소 5명 이상
 - * 최소 2개월 ~ 최대 6개월 한도 내에서 신청

□ 건축 교류활동

- (지원내용) 국내·외 공모전, 워크숍, 전시, 신기술 융합 활동(동아리 등) 등에 소요되는 건축 교류활동비(대·내외 교류활동 실비 보조) 지원
 - * 교과과정 외의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학생참여형 활동에 한함(교과과정에서 진행되는 활동은 지원불가)
- (지원금액) 예산한도내에서 대학(대학원)별 프로그램 운영금액 자율신청
 - * 단, B유형 신청 시 해외 실무연수 예산을 사업비의 50% 이상 편성
(예시) 건축 교류활동 27,000천원 + 해외 실무연수 27,000천원



* 사업추진 과정에서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

* 접수 및 선정 과정에서 보완사항 발생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하고, 사전고지 없이 기한내 미보완할 경우 신청서류 반려

□ 서류제출 및 접수

○ (제출서류)

- 신청공문 1부(신청대학장 직인 공문)
- 사업신청서 1부(별지서식 1)

- 사업계획서 1부(별지서식 1)
- 관련 증빙자료 1부(별도 목차 작성)
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
- 제출서류 전자파일(PDF) 1식 (이메일 제출)

○ (접수방법) 제출서류 일체 전자공문(수신처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) 제출

* 공문제목 : 2024년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실무 연수 및 건축 교류활동 지원 신청서 제출
(첨부파일 용량초과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별도송부로 표기 후 이메일 송부)

○ (접수기간) 2024.4.29.(월) ~ 2024.5.7.(화) 17:00까지

□ 검토 및 보완

○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[별첨2] 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,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 발생 시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
*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평가자료의 데이터 오류, 계산 착오, 불일치 등의 책임은 제출 대학에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 제출 (제출 후에는 진흥원의 보완요청사항 외 수정 불가)

○ 신청서류 검토결과 보완사항 발생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 하고,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

○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류 반려

- 신청공문에 신청기관의 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
- 신청기관이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
-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
- 그 밖에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

□ 선정절차 및 방법

- 평가지표 및 배점은 '건축설계 실무 연수 및 건축 교류활동 지원 평가표'(업무처리지침 별표1)에 따름
 - (1차 평가)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수행의 역량, 추진의지 등을 서면 평가하여 최종선발예산의 1.5배 이내로 2차 평가 대상 선정
 - (2차 평가) 사업수행계획의 우수성, 사업성과 및 발전 가능성 등을 발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학을 최종 선정
- * 평가 당일 총괄책임자 미발표, 평가점수 미달(만점의 60% 미만)시 탈락 처리

□ 유의사항

- 신청대학은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대학에 있음
-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작성·제출 등 동 사업 평가 및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의 허위 기재 등이 점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지는 경우 지원금 조정 또는 지원중단, 협약해지, 신청취소, 환수 등 가능
-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에 기재한 내용 중 사업비 지원이 부적합한 항목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에서 수정요청(예산조정 포함) 할 수 있음
- 사업추진 과정에서 평가 및 결과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전자공문으로 통지함
- 평가위원의 인적사항과 평가점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
- 사업비 비목별 세부 계상기준은 업무처리지침 [별표3] 사업비 비목별 계상 및 정산기준을 따름
-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

□ 문의 및 기타

- (문의처)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본부 도시건축사업실
 - 이경래 연구원 031-389-6340, lkrlkr@kaia.re.kr
 - 이경미 연구원 031-389-6548, lkm3624@kaia.re.kr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Q&A게시판 참조